



광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G 보

제31호 2026. 8. 5.(수)

입법예고

광양시 공고 제2026-1725호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5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6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안 행정예고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7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7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7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7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시스템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7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7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7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7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해구호 교육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80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풍수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8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8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36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6-201호	광양시 광양도시관리계획(공원 제57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39
광양시 고시 제2026-20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42
광양시 고시 제2026-203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43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713, 행정2713)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광양시 축제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운영 절차 정비

3. 주요 내용

-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 마련
-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정비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7. 31. ~ 8. 20.(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2, 3]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직접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 관광과
- 전 화: 061-797-2721
- 팩 스: 061-797-4187
- 전자우편: sycamo@korea.kr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규정안 1부.



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2026-5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근거하여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연합회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연합회의 구성 및 임원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다. 임원의 임기와 직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라. 회원의 해임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연합회의 총회와 의결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바. 연합회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 사. 연합회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11조)
- 아. 연합회의 운영세칙을 규정함(안 제12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aba1113@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예방팀(☎ 062-613-268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예고 제 2026-64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및 행정안전부 예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이원화되어 있던 긴급재난문자의 운영책임자, 승인절차 및 운영체계 등을 통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적용 범위 및 송출지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다. 운영책임자, 사용부서 및 기관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재난정보 입력자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8조)
- 바. 송출요청 권한 및 긴급재난문자 송출요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사. 송출기준 및 업무협조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아.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훈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roncloud@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재난상황관리팀(☎
062-613-231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2026-71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및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 및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동원명령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아. 재난관리물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oung117@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062-613-49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2026-72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로 이원화되어 운영 하던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참여하는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운영, 임무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다.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타 시·도 지원 및 원인조사단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oung117@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062-613-49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2026-73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참여하는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능, 구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평가단원의 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시·군·구 및 타 시·도 위험도 평가단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위험도 평가단 예산 지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oung117@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062-613-49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2026-74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시스템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시스템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통합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라. 재난 원격방송시설 및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마. 위임규정, 교육·훈련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amalrukes@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예방팀(☎ 062-613-268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2026-75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로 이원화되어 운영 하던 재난관리기금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체계,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마. 기금의 결산보고를 규정함(안 제14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chae0651@korea.kr
-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자연재난과
-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062-613-49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 kr](http://www.jeonnam-gwangju.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2026-76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재난관리기금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기금의 확보 및 이자관리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다. 기금의 정산 및 장부의 비치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ae0651@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예방팀(☎



062-613-268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 kr](http://www.jeonnam-gwangju.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2026-77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예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로 이원화되어 운영 하던 재해구호기금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운영 체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ae0651@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062-613-49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2026-78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해구호 교육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해구호 교육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이던 재해구호 교육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재해구호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운영 체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ae0651@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062-613-49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2026-80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풍수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풍수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풍수해 예방, 협력 체계를 일원화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통합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원계획, 실태조사, 비용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yu7023@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팩스 : 062-613-2689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062-613-49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2026-83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로 이원화되어 운영 하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11조
까지)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재난상황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yu7023@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062-613-49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 kr](http://www.jeonnam-gwangju.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 2026-84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7.1.)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이원화되어 있던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통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통합특별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다. 종합대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라. 폭염·한파대응 활동과 재난도우미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취약계층과 무더위·한파 쉼터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바. 폭염·한파저감시설 사업비 보조를 규정함(안 제11조)
- 사. 협력체계, 홍보, 관계부서의 협조, 위탁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아. 시민제안과 안전교육실시, 중복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시자연재난과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udwns0109@korea.kr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자연재난과

3) 팩스 : 062-613-2689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후 전화로 접수확인 필(必)

라.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062-613-49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광양도시관리계획(공원 제57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86-1번지의 광양도시관리계획(공원 제57호)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3일

광 양 시 장

가. 공원의 위치: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86-1번지

나. 공원의 규모: 1,861.4㎡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57	용강어린이 공 원	어린이 공 원	광양읍 용강리 886-1	1,861.4	1,861.4	-	1997.10.15.	



라. 공원조성계획(공원 제57호)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총 계	1,861.4	1,861.4	-	-	22.8	
시 설 소 계	900	938	증)38	-	22.8	시설율: 50.39%
광 장	522	544	증)22	-	-	
조 경 시 설	7	7	-	-	-	
휴 양 시 설	-	-	-	-	-	
유 희 시 설	371	354	감)17	-	-	
편 익 시 설	-	33	증)33	-	22.8	건폐율: 1.22%
관 리 시 설	-	-	-	-	-	
녹 지	961.4	923.4	감)38	-	-	녹지율: 49.61%

마.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7	공원	■ 시설부지면적 변경: 증) 38㎡ - 광 장: 증) 22㎡ - 유희시설: 감) 17㎡ - 편익시설: 증) 33㎡	■ 공중화장실 신축 ■ 공원 조성 현황 반영



바.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부 지 면 적 (㎡)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861.4	1861.4	-	22.8	-	22.8	-	-
시 설 소 계			900	938	-	22.8	-	22.8	-	-
광장	소 계		522	544	-	-	-	-	-	-
	①	광 장 ①	482	482	-	-	-	-	-	-
	②	광 장 ②	40	62	-	-	-	-	-	-
조경 시설	소 계		7	7	-	-	-	-	-	-
	㉑~㉒	식 수 대	7	7	-	-	-	-	-	-
휴양 시설	소 계		-	-	-	-	-	-	-	-
	㉓~㉔	파 고 라	-	-	-	-	-	-	-	-
	㉕~㉖	긴 의 자	-	-	-	-	-	-	8EA	6EA
유희 시설	소 계		371	354	-	-	-	-	-	-
	③	어린이놀이터	221	221	-	-	-	-	-	-
	㉗	시 소	-	-	-	-	-	-	-	-
	㉘	그 네	-	-	-	-	-	-	-	-
	④	모래놀이터	150	133	-	-	-	-	-	-
편익 시설	소 계		-	33	-	22.8	-	22.8	-	-
	⑧	화 장 실	-	33	-	22.8	-	22.8	-	1개동
공원 관리 시설	소 계		-	-	-	-	-	-	-	-
	㉙~㉚	안 내 판	-	-	-	-	-	-	-	-
	㉛	분 전 함	-	-	-	-	-	-	-	-
	㉜~㉝	볼 라 드	-	-	-	-	-	-	-	-
	㉞	소 화 전	-	-	-	-	-	-	-	-
	㉟~㊱	조 명 시 설	-	-	-	-	-	-	-	-
녹지계			961.4	923.4	-	-	-	-	-	-
녹 지	⑤	녹 지	243	243	-	-	-	-	-	-
	⑥	녹 지	282	244	-	-	-	-	-	-
	⑦	녹 지	436.4	436.4	-	-	-	-	-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061-797-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5일

광 양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

승인번호 및 연월일	목 적	장 소	면 적	기 간	피 승인자	
					주 소	성명
2026-4 (2026. 8. 5.)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사업	광양시 금호동 836번지	470.0㎡	하기일로부터 30년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관광과)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5.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성황동 1869외 2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8.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3건					
1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02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월면 용소길 8	20260805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89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상면 백운2로 462-30	20260805	20090623	광양시 명산인 백운산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성황동 18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성황1길 10 (성황동)	20260805	20210210	옛 마을이름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